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7일 06시 34분



목차

목차	2
보도자료 - 교통	3
여수시, 어린이 보호구역 주·정차 주민신고제 '본격 시행'	3

보도자료

해명자료

여수시, 어린이 보호구역 주·정차 주민신고제 ‘본격 시행’

2020.07.28 조회수 287 담당부서 교통과 담당자 박종열 연락처 061-659-4162

- 8월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·정차 위반 시 과태료 8만 원
“전 시민이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지킨다”,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

여수시(시장 권오봉)는 지난달 29일부터 ‘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·정차 주민신고제’ 제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.

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불법 주·정차 차량을 스마트폰 앱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위반 차량에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.

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·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도로 2배로, 승용차 기준 8만 원이다.

신고 대상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 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 도로에 주·정차한 차량이다.

신고 시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첨부하면 된다.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·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.

시 관계자는 “제도 시행으로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며, “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



첨부파일

전체(Zip)다운로드

 2. 여수시, 어린이 보호구역 주%U2027정차 주민신고제 '본격 시행'.jpg (20563 hit/ 267.7 KB) ↓

미리보기

목록

이전글

< 언택트·온택트... '2020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' ...

다음글

여수시, 무인민원발급기 22대에 카드·모바일결제...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